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5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월 6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7일
- 라. 상정일자: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 1. 2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조문 추가

(안 제12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문 추가

나.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안 제24조제2항)

-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증지수입 납부 원칙의 수수료 조항 정비

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신설(별표 제6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 과태료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양성평등기본법」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3. ~ 11. 23.)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원안 동의

4.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조문 추가
(안 제12조제1항)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²⁾에 따라

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2조(위원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도록 규정함

○ 수수료³⁾ 납부 방법의 다양화(안 제24조제2항)

- 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한정하여 납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신설(별표 제6호)

-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기준이 신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⁴⁾)됨에 따라, 그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조례안 비교 ◆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가입하지 않는 기간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8) | 개정 조례안 (별표6) |
|---------------|---------------------|--------------------------------------|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90일 초과인 경우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2021. 5. 4.)으로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시행 2021. 6. 10.]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별표 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 |
| 가. 입간판 | |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 |
| 가) 연면적 1㎡ 미만 | | 개당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 개당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 개당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 라) 연면적 3㎡ 이상 | |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2) 도로 외의 경우 | | |
| 가) 연면적 1㎡ 미만 | | 개당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 개당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 개당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라) 연면적 3㎡ 이상 | |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나. 현수막 | | |
| 1) 면적 3㎡ 미만 | |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2) 면적 3㎡ 이상 5㎡ 미만 | |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4) 면적 10㎡ 이상 | |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다. 벽보 |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 라. 전단 |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